

<별표 22> <개정 2010.12.29>

종합금융회사의 기본자본,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

(제8-32조제2항 관련)

구 분	범 위
기본자본	- 자본금(누적적 우선주제외) - 자본잉여금 - 이익잉여금(종합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및 제8-44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제외) -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-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
보완자본	- 재평가적립금 -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의 100분의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-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“정상” 및 “요주의”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 -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(관련 세액효과 차감 후)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,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- 영구후순위채권,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-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차입자금
공제항목	- 영업권 상당액, 이연법인세차,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자기주식계정은 자기자본(기본자본)에서 공제 -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 보유한 타 금융기관 발행 자본조달수단(주식, 부채성자본조달수단,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등)은 자기자본에서 공제